1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08년 2월 4일
 ○ 심 사
  •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2. 18) 상정 및 의결

2. 주요골자
 ○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 위원을 7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1명 증원하고, 협의회 위원에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추가함(안 제2조).

3.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0조
 ○ 「유아교육법」 제8조

4.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조호식)
 ○ 유아교육과 관련한 협의회 심의과정에 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위원에 유치원 설립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5.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재경)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위원을 7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1명 증원하고,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에 유치원 설립 담당부서의 과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주요기능이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유아교육기관의 문제점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임을 감안해 볼때, 유치원 설립업무 담당부서장인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추가하여 심의과정에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다만, 지금까지 업무담당 부서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협의회 운영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향후 업무추진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요지
 ○ 해당없음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